

[별표 3] <개정 2008.3.4>

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(제13조관련)

1. 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
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
2.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
 - 가.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·운영
 - 나.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 및 임무
 - 다. 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실·비상기술지원실·비상운영지원실·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 및 임무라. 그 밖의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
3.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
 - 가.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
 - 나. 방사선 방호장비
 - 다.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
 - 라.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시설
 - 마. 주제어실·비상기술지원실·비상운영지원실·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
 - 바.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
 - 사. 비상전원설비
4. 당해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
 - 가. 백색비상의 세부기준
 - 나. 청색비상의 세부기준
 - 다. 적색비상의 세부기준
5.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
 - 가. 사고 초기의 비상연락 및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
 - 나.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의 최초보고에 관한 사항
 - 다.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피폭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
6. 방사능재난 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

가.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대응조치

나.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방사선비상의 진행상황 및 그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

다.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시 비상통신체제

라. 발생한 방사능재난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

마. 사고분석 및 방사선영향 평가

바.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시설 부지내의 방문자에 대한 보호조치

사. 방사능오염의 제거

아.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

자.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 및 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, 기술적 사항의 자문,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

차.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 부지 내에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방사선 응급조치

7. 방사능재난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

8.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

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

9. 그 밖에 원자력시설 등에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※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